

2) 교원 정원 배정 기준

가) 20**. 3. 1.자 예상정원을 학급 수에 따라 아래표의 배정기준으로 산출한다.

학급수 \ 구분	중 학 교				고 등 학 교			
	교사	교감	교장	계	교사	교감	교장	계
3	10	(1)	1	12	10	(1)	1	12
4	11	(1)	1	13	11	(1)	1	13
5	12	(1)	1	14	13	(1)	1	15
6	13	1	1	15	14	1	1	16
7	14	1	1	16	15	1	1	17
8	15	1	1	17	16	1	1	18
9학급 이상교	※ 교장, 교감 외 ◦ 9학급: (학급 수) × 1.75 명 + 2명 = 18명 ◦ 10학급: (학급 수) × 1.75 명 + 1명 = 19명 ◦ 11학급 이상: (교사 수) = (학급 수) × 1.75 명 (단,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				※ 교장, 교감 외 ◦ 일반계교사수: 학급당 1.95 ◦ 농업계교사수: " 2.15 ◦ 공업계교사수: " 2.15 ◦ 상업계교사수: " 2.05 ◦ 외국어고교사수: " 2.15 ◦ 특성화고(종합고): 계열별 학급당 위 비율 적용 후 합산 (단,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			
특수	◦ 기준: 학급수×1명 ◦ 추가배치기준: ① 순회학급 제외 특수 3학급 이상인 경우 ②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(특수학급 교사 수 × 학생 6명)을 초과하는 경우				◦ 기준: 학급수×1명 ◦ 추가배치기준: ① 학교당 1명 추가 배치 (단, 1학급 학생수 4명 이하일 경우 추가배치 제외) ②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가 (특수학급 교사 수 × 학생 7명)을 초과하는 경우			
보건	◦ 9학급 이상 (단, 9학급 미만 학교 예산 내에서 교육지원청별 정원외기간제교사 인원 할당) ◦ 일반학급 36학급 이상학교 정원외기간제교사 1명 추가 배치(2025학년도)							
교감	◦ 5학급 이하(특수학급 포함)교는 교감 미배치 가능(배치 시 교감은 수업을 담당해야 함) ※ 근거: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36조의 2 ◦ 43학급 이상의 중·고등학교에 복수교감 배치 가능(특수학급 포함)							
진로진학	◦ 3~8학급 학교는 배정 기준에서 1명을 더하고, 9학급 이상의 학교는 정원배정 산식에 포함 (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							
수석교사	◦ 정원배정 산식에 0.5 추가							